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1
----------	-----

2025. 4. 30.(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성대 의원)

※ 박병천 의원 청가

가. 제안이유

○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일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4조)
- 라.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안 제5조~안 제6조)
- 마.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7조)
- 바. 회계관계공무원(안 제8조)
- 사. 사업계획서 제출(안 제9조)
- 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10조)
- 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
- 차.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12조~안 제13조)
- 카.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안 제14조~안 제15조)
- 타. 간사 및 시행규칙(안 제16조~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개정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06.30. 만료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던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로 개정함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6월 30일에 만료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3항¹⁷⁾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5조 제4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을 제3호로 이동하고 제4호를 ‘그 밖의 수입금’ 으로 개정함
 - 그 밖의 수입금을 신설하는 것은 기금 조성 전 집행잔액, 그 외 기타 수입금 등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13조 위원의 임기, 안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안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안 제16조 간사는 위원회의 분리 운영을 위해 신설하고, 안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제3항을 삭제함
 - 교육부의 권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분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의 근거 하에 기금 관리 및 운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2025.06.30.으로 통폐합, 분교장 개편,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17)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안정적, 효율적 예산지원을 위한 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2030.06.30.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학교별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 학교 사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성격 및 목적이 다르므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폐합”이란 동일학교급간 통학구역 조정을 통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학교”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제2호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5. “이전 재배치”란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개발지역 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운영”이란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운영하여 학교규모를 적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7.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각각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적정규모 육성 학교(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운영)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통학지원 등의 사업
2.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제5조의 지원사업
3.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기금 배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중 제1호에 대한 기금 배분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관련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마다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통합·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국장, 행정과장, 유치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교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다.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라.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일시에 교부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 적정규모 육성 학교(통폐합·분교장개편·이전재배치·통합운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 효율적 예산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세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세출)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 작은학교 특색교육 및 관할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제6조(기금의 용도)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6조(기금의 용도)에 따른 사업을 전제함
 - ※ 향후 지원사업은 변동될 수 있음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 추계기간은 통폐합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확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함(단, 기금 전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세입·세출은 기금설치 시점부터 작성)
 -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 산출내역 단가는 충청북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충청북도 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기본운용계획에 따름

나. 추계 결과: (세입) 151,734,673,000원, (세출) 107,483,060,000원

○ 세입

-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135,878,700,000원
*2013~2029년까지 보통교부금 합산액[붙임1. 참고]
- 자체 수입(이자 수입)**: 15,855,973,000원
**2021~2024년: 실제 이자 수입
2025년: 기금운용계획 기준
2026~2029년: 전년도말 잔액의 2.07%로 일괄 계산
(2021~2024년 평균 이율 적용)

○ 세출

-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 93,420,920,000원
*2021~2024년: 결산 기준
2025년: 현재액 기준
2026~2029년: 2025년도 현재액 기준(기금지원 완료 2교 제외)
※ 학교의 신청에 따라 지원액 변동 있음
- 작은학교 지원: 13,643,254,000원
· 10,000,000원 × 대상학교 수*
*2025년 현재 지원 학교 수(170교) 기준으로 5년간 추계
2021~2024년: 결산 기준
2025년: 현재액 기준
2026~2029년: 1교당 10,000천원으로 추계
※ 희망학교의 신청에 따른 지원으로 학교 수 및 지원액 변동 있음
- 관할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추진: 418,886,000천원
*2021~2024년: 결산 기준
2025년: 현재액 기준
2026~2029년: 2025년도 현재액 기준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자체수입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행정국 행정과장 박영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 2024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23,382,673	6,200,000	4,313,000	9,514,000	5,822,000	2,503,000	151,734,673	
세 출	36,201,298	15,436,162	13,961,400	13,961,400	13,961,400	13,961,400	107,483,060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	30,818,346	13,726,574	12,219,000	12,219,000	12,219,000	12,219,000	93,420,920	
작은학교 지원	5,176,066	1,667,188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3,643,254	
관할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 추진	206,886	42,400	42,400	42,400	42,400	42,400	418,886	
재원 조달	123,382,673	6,200,000	4,313,000	9,514,000	5,822,000	2,503,000	151,734,673	
의존 재원	소 계	115,178,700	4,050,000	2,700,000	8,100,000	4,500,000	1,350,000	135,878,7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15,178,700	4,050,000	2,700,000	8,100,000	4,500,000	1,350,000	135,878,7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8,203,973	2,150,000	1,613,000	1,414,000	1,322,000	1,153,000	15,855,973
	자체수입	8,203,973	2,150,000	1,613,000	1,414,000	1,322,000	1,153,000	15,855,973
지 방 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붙임] 학교별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통합학교	폐지학교	교부(예정)액	교특 지원액	잔액(기금 적립)
2013	괴산오성중	목도중, 장연중, 감물중	20,000,000	7,341,958	12,658,042
	소 계		20,000,000	7,341,958	12,658,042
2014	이원초	대성초	3,000,000	2,576,620	423,380
	소 계		3,000,000	2,576,620	423,380
2017	목도초	추산초	4,000,000	2,917,592	1,082,408
	단양소백산중	가곡중, 단산중, 별방중	18,000,000	3,423,431	14,576,569
	대강초	대강초장정분교장	2,000,000	1,352,430	647,570
	소 계		24,000,000	7,693,453	16,306,547
2018	충주중앙탑초	중앙탑초	4,000,000	3,200,000	800,000
	수정초	수정초삼가분교장	2,000,000	699,796	1,300,204
	양강초	미봉초	4,000,000	2,556,990	1,443,010
	소 계		10,000,000	6,456,786	3,543,214
2019	양성초	강천초	4,000,000	2,705,471	1,294,529
	진천상신초	상신초	4,000,000	2,942,971	1,057,029
	청주소로초	옥산초소로분교장	3,000,000	2,050,000	950,000
	청주내곡초	내곡초	4,000,000	737,027	3,262,973
	새너울중	상촌중, 용문중, 황간중	19,980,000	4,901,121	15,078,879
	소이초	대강초	4,000,000	2,628,816	1,371,184
	단천초	단천초가산분교장	2,000,000	1,419,195	580,805
	회인초중	초중 통합운영	1,000,000	506,129	493,871
	연풍초중	초중 통합운영	1,000,000	200,000	800,000
	소 계		42,980,000	18,090,730	24,889,270
2020	충주남한강초	남한강초	6,000,000	1,587,491	4,412,509
	충주대소원초중	초중 통합운영	7,620,000	1,833,253	5,786,747
	엄정초	야동초	4,000,000	835,861	3,164,139
	소 계		17,620,000	4,256,605	13,363,395
2021	송학초	입석초	4,000,000	2,200,000	1,800,000
	소 계		4,000,000	2,200,000	1,800,000
2022	산척초중	초중 통합운영	9,000,000	5,058,000	3,942,000
	가덕초중	초중 통합운영	9,000,000	5,150,000	3,850,000
	(목도고 폐지)		9,000,000	253,520	8,746,480
	(주덕고 폐지)		9,000,000	300,000	8,700,000
	용원초동락분교장	동락초	500,000		500,000
	판동초송죽분교장	송죽초	500,000		500,000
	영춘초별방분교장	별방초	500,000		500,000
	소 계		37,500,000	10,761,520	26,738,480
2023	복대초	복대초	5,000,000		5,000,000
	칠성초중	초중 통합운영	4,000,000	2,200,000	1,800,000
	삼성초	능산초	4,000,000		4,000,000
	소 계		13,000,000	2,200,000	10,800,000
2024	상당초	상당초	5,000,000	343,628	4,656,372

연도	통합학교	폐지학교	교부(예정)액	교특 지원액	잔액(기금 적립)
	소 계		5,000,000	343,628	4,656,372
2025	충북생명산업고	보은정보고	9,000,000	4,950,000	4,050,000
	소 계		9,000,000	4,950,000	4,050,000
2027	가칭)부윤2초	부윤초	3,000,000	1,650,000	1,350,000
	가칭)화곡중	주덕중	6,000,000	3,300,000	2,700,000
	가칭)제천하이텍고	제천디전고-산업고	9,000,000	4,950,000	4,050,000
	소 계		18,000,000	9,900,000	8,100,000
2028	감곡중	감곡중-매곡여중	10,000,000	5,500,000	4,500,000
	소 계		10,000,000	5,500,000	4,500,000
2029	가칭)지북초	신송초	3,000,000	1,650,000	1,350,000
	소 계		3,000,000	1,650,000	1,350,000
2025	증약초	증약초대정분교장	2,000,000	1,100,000	900,000
	소 계		2,000,000	1,100,000	900,000
2026	동광초	산외초	4,000,000	2,200,000	1,800,000
	소 계		4,000,000	2,200,000	1,800,000
총 계(통합학교: 38교, 폐지학교: 52교)			223,100,000	87,221,300	135,878,700